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4-49호
2024. 8. 2.(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3)

-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고시 제2024-87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88호) 2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고시 제2024-89호) 3

공 고(6)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795호) 9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4-805호) 11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808호) 13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809호) 14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810호) 15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817호) 16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4-814호) 17

공 략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87호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지목별	평균지가 (원/㎡)	지목별	평균지가 (원/㎡)	지목별	평균지가 (원/㎡)
전	200,696	주유소용지	971,540	수도용지	81,196
답	266,940	창고용지	608,565	공원	195,626
과수원	277,631	도로	253,441	체육용지	354,245
임야	55,346	철도용지	275,948	종교용지	689,676
대	867,083	제방	63,742	묘지	139,620
공장용지	528,539	하천	114,885	잡종지	421,944
학교용지	613,586	구거	218,581		
주차장	466,653	유지	178,228		

나. 본 고시의 적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대화동 256-4, 254-10	대화로 239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대화동)을 반영	2024. 8. 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전고시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붙임 이전고시 1부. 끝.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호】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53호(2015년 4월 3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4호(2019년 1월 31일)로 사업시행인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4호(2020년 1월 10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4년 2월 21일 임시사용승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432(2024년 4월 12일)공사완료 고시된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한 서류는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042-639-89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정식 (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명칭 :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505외 11필지
- 사업면적 : 44,150.8㎡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신대동)
- 성 명 :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조합설립인가일 : 2016. 02. 03.

5. 사업시행인가일 : 2019. 01. 31.

6.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20. 01. 10.

7. 아파트 준공인가일 : 2024. 4. 9.

8. 도식계획시설 준공인가일 : 2024. 4. 12.

8. 이전고시 내역

가) 지번별 조서(지적확정조서)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계				44,150.8	
택지	대덕구 와동	505	대	38081.2	분양아파트 (근린생활 및 공공시설포함)
택지	대덕구 와동	506	대	500	권해경 (유치원)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07	공원	1832.6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08	도로	3.3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09	도로	190.2	대전광역시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0	도로	1270.7	대전광역시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1	도로	474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2	도로	1605.8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3	도로	48.1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4	도로	8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5	도로	134.5	대덕구
정비기반시설	대덕구 와동	516	도로	2.4	대덕구

나) 건축시설의 내역

- 건축시설의 종류 및 용도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상건축물 연면적 : 128,155.8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연면적 : 127,107.6520㎡ - 근린생활시설 : 1048.2436㎡
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상 건축물 ○ 아파트 :7개동(101동~107동) ○ 근린생활시설 : 1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지하3층 / 지상28층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상 건축물 ○ 아파트 : 910세대 ○ 근린생활시설 : 25세대(점포) 	
사업시행 (경미한) 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할 내용 ○ 변경 전 20*동 ○ 변경 후 10*동 으로 변경 	

다) 건축시설의 규모별 내역

공동주택(일반분양 및 조합원아파트)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비고
63A	175	63.8491	120.3737	35.9374	
63B	104	63.4496	119.2268	35.5455	
75A	148	75.9248	140.4013	41.5722	
75B	112	75.7430	139.9435	41.4211	
75C	25	75.8596	140.2201	41.5112	
84A	168	84.9845	154.1530	45.2591	
84AX (103-2406)	1	84.9845	154.3129	45.2544	공용면적 설계오차 0.1599 조정
84B	156	84.6729	156.1861	46.1958	
84C	21	84.4656	155.5739	45.9852	

근린생활시설				
구분	전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비고
지층 101호~110호	32.7600	48.2347	20.4663	
1층 201호~206호, 208호	25.6230	37.7264	16.0076	
1층 207호	25.6230	37.7270	16.0076	공용면적 설계오차 0.0006 조정
2층 301호~307호	25.6230	37.7264	16.0076	

라) 이전 대상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 권리자 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	계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63A	175	123	52		
63B	104	17	87		
75A	148	87	61		
75B	112	16	96		
75C	25	7	18		
84A	168	168			
84AX	1	1			공용면적 설계오차로 84A에서 1세대 분할
84B	156	130	26		
84C	21	20	1		
계	910	569	341		

마)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권리신고(권리종류별)				
계	근저당	가등기	압류	전세권
5	4		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795호

공시송달공고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되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2024. 7. 19.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 공고 내용: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4. 공고 기간: 2024. 8. 2. ~ 2024. 8. 16.(14일)
5. 공시송달 대상자: 불임 참조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942)

[붙임]

□ 토지(물건)조사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지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서동	산17-11	임	토지	432	㎡	1/3	송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6-○○	김동 ○ 송연 ○	경북 구미시 상모로5길 7, B동 ○○○호 충남 금산군 금산읍 동산길 ○○	상속자 상속자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05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76-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17.(15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지적 (㎡)	편입면적 (㎡)	지목	소유자		이관계인 동의여부
				주소	성명	
대전시 대덕구 와동 76-1	337	10.99	답	대전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54-22	홍**	동의
	계	10.99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42-608-5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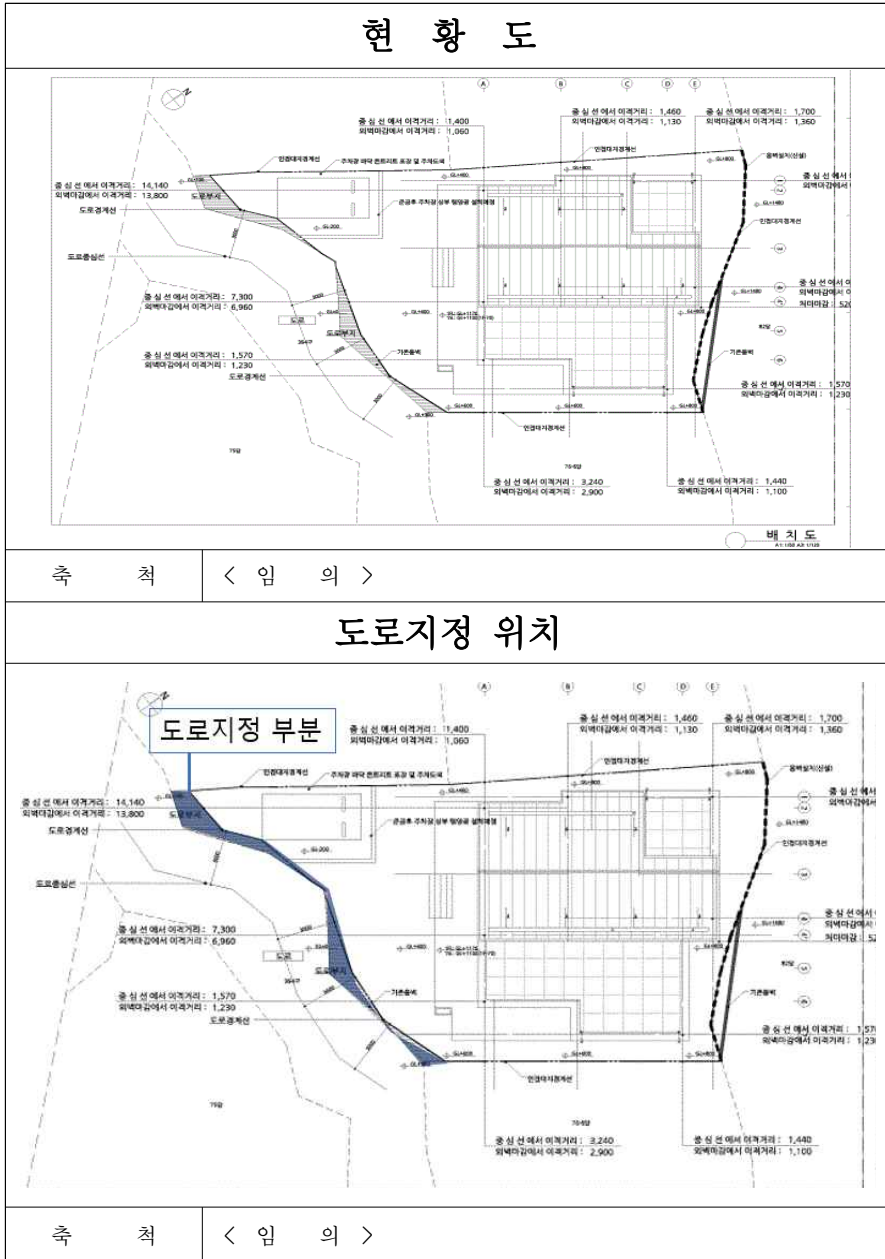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16.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교육), 제101조(과태료)제4항제1호
-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관
- 행정처분 공고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통지
 - 나. 대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25번길 90, 2층 (비래동) / 아이누리대전동구 (허*화)
 - 다. 처분 사유: 2023년 기존영업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교육 미이수
 - 라. 처분 내용: 과태료 200,000원
- 의견제출
 - 가.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나. 과태료납부기한: 2024. 8. 16. (금)
- 유의사항
 -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증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상기 공고와 관련 사항은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6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끝.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16.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책과(☎042-608-5306) 문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말소)한 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16.(15일간)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연번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1	이용업	문화이용원	허○무	대전 대덕구 대청로 48 (신탄진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2. 3. 14.	직권말소
2	네일 미용업	네일하오	이○정	대전 대덕구 우암로 406, 1층 (비래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 10. 1.	직권말소
3	일반 미용업	해피헤어 클럽	문○현	대전 대덕구 동심1길 49, 1층 (대화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3. 1. 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위 공고 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16.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판
- 행정처분 공고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체납고지)통지
 - 나. 대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21번길 30, 2층 (덕암동)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세빛 (양*수)
 - 다. 처분 사유: 2023년 유통전문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라. 처분 내용: 과태료 20만원
- 의견제출
 - 가.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나. 과태료납부기한: 2024. 8. 16. (금)
- 유의사항
 -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증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상기 공고와 관련 사항은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6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1-34번지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행정예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 행정예고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1-34번지 앞 노상주차장 1면 폐지(사유: 381-34번지 인접도로에 조성하는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추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위 치	폐지면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81-34번지 앞 노상공영주차장 1면	1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8. 2.(금) ~ 2024. 8. 22.(목)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hilary12@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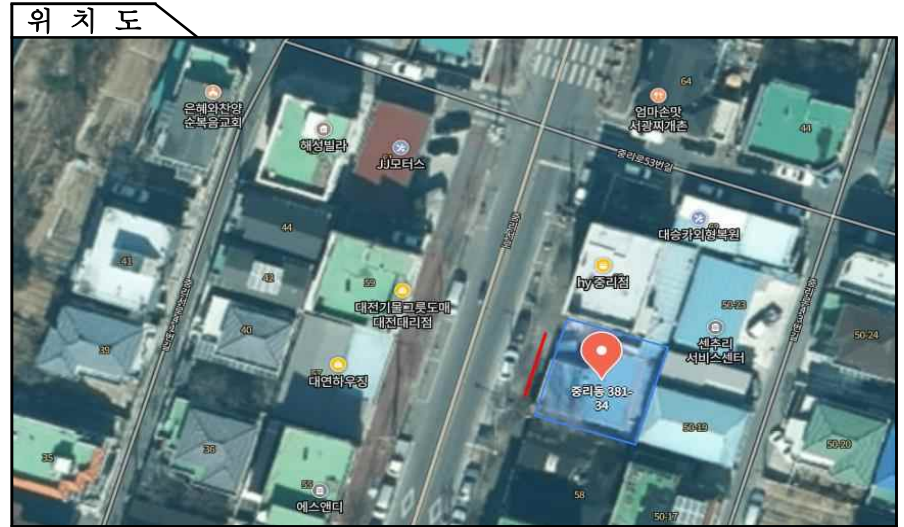
마. 제출기일: 2024. 8. 2.(금) ~ 2024. 8. 22.(목)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끝.